

[KATI 비관세장벽] 이슈 전문가 자문 리포트

말레이시아 2025년 SST 개정안 및 과세 체계 분석



* 작성 : 현지 전문기관(Deloitte)

1. SST 개정안 배경

2025년 말레이시아의 판매세(Sales and Service Tax, SST) 개정안은 수입과 제조에 대한 과세 체계를 크게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정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히 말레이시아 내 소비와 수입에 대해 더 명확한 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추진경과

2024년 10월 18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국가예산안에서 판매세 범위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수의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 증대와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수의 일부는 말레이시아 국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강화와 교육 및 보건의 질 향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 리스트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 판매세 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합니다:

- 기본 식품에는 판매세를 적용하지 않음
- 연어, 아보카도 등 수입된 고급 비필수품에는 판매세를 적용함

위 정책은 2025년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매세 범위 확대 시행이 규정 세부 조정이 필요해 2025년 6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9일

개정된 면세물품 규정(Exempted Goods Order)과 판매세율 규정(Tax Order)이 발표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들은 대상 품목에 대한 변경된 판매세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 1(4)항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판매세율 변경의 과도기적 적용에 관한 FAQ(자주 묻는 질문) 형태의 안내서("과도기 안내서")가 발행되었습니다(2025년 6월 9일 기준).

2. SST 과세 시점

2025년 개정된 판매세법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과세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제조업자	수입자
과세시점	판매(ex. 송장 발행일) / 사용(ex. 물품 사용 시점) / 처분(ex. 처분 시점)	통관일
비고	물품이 실제 거래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입품은 통관 시점에서 과세 되어 관세 대상 물품인 것처럼 부과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율은 세관 공무원이 물품 반출을 승인하는 날, 즉 통관이 이루어지는 날의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CA 제19조).

* 관련 : 2018년(Sales Tax Act("STA")) 제8조

특히 과세 시점에 대한 규정은 판매세 등록 제조업자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조한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송장 발행일, 물품 사용 시점, 또는 물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매매 행위 자체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물품이 실제로 거래되거나 사용, 처분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의 경우, 판매세는 과세 대상 물품이 관세 대상 물품인 것처럼 부과됩니다. 관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때 수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1967년 제78A조). 따라서 과세 대상 물품이 관세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판매세가 부과되며 납부되어야 합니다.

3. 세율의 적용과 기준

세율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우선, 모든 품목은 기본적으로 10%의 판매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이라 함).

단, 품목이 「2025년 판매세 면세물품 규정(Sales Tax (Goods Exempted from Sales Tax) Order 2025)」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물품'이라고 칭함).

품목이 「2025년 판매세율 규정(Sales Tax (Rate of Sales Tax) Order 2025)」에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품목에는 5% 또는 지정된 세율(10% 이외)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과세 대상 물품'임).

「면세물품 규정」 및 「판매세율 규정」에 명시된 품목은 [붙임1]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이 「면세물품 규정(Exempted Goods Order)」 또는 「판매세율 규정(Tax Order)」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상품에 할당된 관세 코드(HS코드)와 품목 설명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관세 코드에 해당 품목이 속하는지 판단하는 규칙은 「2022년 관세 규정(Customs Duties Order 2022, CDO)」에서 다루는 해석 및 분류 규칙에 따릅니다.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KATI에서 한국 HS코드 기준으로 세율도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 기준

제조된 과세 대상 물품의 판매에 판매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가치(과세표준)는 「2018년 판매세 (과세 물품 판매 가치의 결정) 규정(Sales Tax (Determination of Sale Value of Taxable Goods) Regulations 2018, 이하 '평가 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입품에 대한 SST 과세 기준 가치

수입되는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할 때의 기준 가치는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수입품 과세 기준 가치

=

관세법(CA)에 따른 규칙에 따라 산정된 가치

+

수입 관세액(있을 경우)

+

소비세액(있을 경우)

* 관련 : 2018년(Sales Tax Act("STA"))제9조

관세법(CA)에 따르면, 과세 대상 물품의 가치는 1999년 관세법(평가 규칙) 규정(Customs (Rules of Valuation) Regulations 1999, "CR")에 따라 산정되며, 다음 방법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합니다.

1) 거래 가격(Transaction value)

: 말레이시아 수출용으로 판매될 때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인 가격
(규정된 조정사항 적용)

2) 동일 상품의 거래 가격

3) 유사 상품의 거래 가격

4) 공제 가치(Deductive value)

: 관련 비용 또는 이윤을 공제한 재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결정

5) 계산 가치(Computed value)

: 상품의 총 생산비용에 이윤과 일반 경비를 더하여 산정

6) 유연 가치(Flexible value)

: 위 방법들의 유연한 해석과 합리적인 조정을 바탕으로 결정

지정 구역(Designated Areas, DA) 및 특별 구역(Special Areas, SA)을 포함하는 과세 대상 물품의 이동

다음 경우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단, 국무장관이 관보에 공표한 명령으로 지정한 과세 대상 물품은 예외임) (판매세법(STA) 제50조 및 제57조)

- DA/SA로 수입된 과세 대상 물품
- DA/SA 간 운송되는 과세 대상 물품
- DA/SA에서 SA/DA로 운송되는 과세 대상 물품

말레이시아에서 DA/SA로 운송되는 과세 대상 물품은 수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DA/SA에서 말레이시아 본토로 운송되는 과세 대상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세법 제51조 및 제58조).

DA(지정 구역)는 라부안(Labuan), 랑카위(Langkawi), 티오만(Tioman), 팡코르(Pangkor), Pulau 1(섬 1)로 정의됩니다 (판매세법 제2조 제1항).

SA(특별 구역)는 자유무역지대(free zone), 허가 창고(licensed warehouse), 허가 제조 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공동 개발 구역(Joint Development Area), 그리고 관세법 1967년 제77B조에 따라 허가된 석유 공급 기지(petroleum supply base)로 정의됩니다 (판매세법 제2조 제1항).

4. SST 영향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SST 영향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필수 식품은 일반적으로 판매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세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한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판매세 면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이나 원자재가 여전히 판매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특정 필수 식품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세뿐만 아니라 서비스세 범위의 확대도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예: 이전에는 서비스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임대 서비스가 현재 8%의 서비스세 대상에 포함됨).

- 이로 인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간접세 증가가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국가에서 생산된 현지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판매세 및 서비스세의 특성상, 특정 식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두 세금의 의도치 않은 누적 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여 해당 제품들의 생산 비용을 추가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매세 범위 확대는 이전에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기계류 및 장비도 포함할 수 있으며, 현재 기계류·장비에 대한 판매세 면제 범위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장비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해 생산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판매세 범위 확대에 따른 수출량, 가격 경쟁력 및 시장 접근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업체를 위한 실무적 조치 권고

✓ 분류 분쟁을 최소화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

분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HS 코드 분류에 관한 관세당국의 판정(분류 판정(classification ruling))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류 판정은 신청인에게 3년간 구속력을 가지며, 그 후 2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07년 관세(관세 판정) 규정("판정 규정") 제5조 및 제7조).

분류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세법(관세 규정, CDO)」의 해석 및 분류 규칙에 근거한 기술적 근거(참고자료)를 마련할 것
- 위 기술적 입장과 부합하는 보완 서류(예: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브로셔, 사양서 등)를 보관하여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
- 동일 상품에 대하여 일관된 HS 코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갑작스러운 변경은 관세당국(특히 해당 상품과 수입 신고 업체에 익숙한 담당자)의 질의가 있을수 있음
- 가능하다면, 동일 상품에 대해 다른 관할지역에서 받은 분류 판정도 함께 보관·참조할 것. 이는 관세법(관세 규정, CDO)에서 규정한 분류 기준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일반해석규칙(GRI) 및 조화상품분류체계(HS)와 일치하는 경우 특히 유용함

✓ 향후 SST 범위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완화 및 세무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

상품 또는 원자재의 잘못된 분류로 인한 판매세 과다 납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품목에 적용할 합리적인 HS 코드 분류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에 제공되고 있는 판매세 면제 혜택 범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판매세 면제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판매세 비용과 누적 효과(cascading impact)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판매세 면제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면제 조건 미준수로 인해 판매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세당국의 구두 조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히 서면 자료를 포함한 증빙 문서를 항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회사가 채택한 관행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판매세 추징 등 분쟁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세무 조항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세법 변경 등 세금 관련 입법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회사의 판매 또는 구매 모델 구조를 재검토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판매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판매세 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기존 사업 모델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판매세 면제 제도 파악
- 판매세 면제 제도 신청 (판매세 범위 확대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제도 포함)
- 판매세 등록 신청 (이전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업체 포함) 및 관련 판매세 준수 요건 숙지

말레이시아의 2025년 판매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의 명확화,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적시에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며, HS 코드 분류나 면제 범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필수품 및 고급 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 수출 입지 변화 등은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무 계획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궁금증 Q&A!



HS코드 재분류 또는 가공 방법 변경에 따른 SST 면제 또는 세율 인하 가능성



판매세율 적용은 해당 상품에 배정된 관세 코드(HS Code)와 품목 설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품을 적절한 관세 코드로 분류하는 것은 주로 해당 관세 코드에 따른 적정 판매세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세율 인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공 방법이 변경되어 전혀 다른 종류의 품목이 만들어질 경우, 이로 인해 새로운 관세 분류(관세 코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서로 다른 판매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류 외에도 2018년 판매세(납세의무 면제 대상자) 명령서(Sales Tax (Persons Exempted from Payment of Tax) Order 2018, 이하 '면제 명령서')에 따른 다양한 판매세 면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명령서와 관련 개정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ysst.customs.gov.my/SSTOrders>

면제 명령서에는 특정 상황과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매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명시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관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 HS 코드 불일치가 있을 경우 SST 적용



판매세율 적용은 해당 상품에 배정된 관세 코드(HS Code)와 품목 설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분류 규칙을 참고하여 상품을 분류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 간 해석 차이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관세 당국이 수출국에서 적용한 HS 관세 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레이시아 관세 당국은 관세 부두에서 자국이 결정한 HS 코드에 따라 판매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수입 후 진행되는 사후 감사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수입업자는 자신이 채택한 HS 관세 코드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관련 분류 규칙을 참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관세 당국에 서면 분류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관세 당국이 수입업자 편으로 판정을 내릴 경우, 이미 초과 납부한 판매세는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세법(STA) 제39조). 그러나 환급 청구는 초과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MoF")에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환급 여부는 재무부의 재량에 따릅니다(판매세법 제35조).



말레이시아 내 과세 의무 부과기준인 ‘제조’의 정의



말레이시아 SST에서는 “제조(manufacture)”를 기준으로 과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조”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판매세법(STA) 제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기재료 또는 무기재료를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크기, 형태, 구성, 성질 또는 품질을 변경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기계 또는 기타 제품의 부품 조립도 포함한다. 다만, 건설 목적의 기계나 장비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제조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 ① 해당 품목이 수동적 또는 기계적으로 변환되는지 여부
- ② 품목의 크기, 형태, 구성, 성질 또는 품질 중 최소 두 가지가 변화하는지 여부

다만, 관세당국이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하나 그 예는 많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판매세 가이드인 「제조 및 수출입 안내서 (Manufacturing Guide)」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계 위에서 두세 개의 도구나 부품을 나사로 조립하는 단순 제조 과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제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므로,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당국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STA 제43조).
- 또는 ‘제조(manufacture)’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재무부(MoF)가 결정하며, 재무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STA 제3조).

- i. 해당 기계가 완전한 상태이며 새로운 설치에 추가 자재가 사용되지 않을 것
- ii. 설치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